

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범위

□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주거 관련 지출 범위

○ (임차비용)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

- 임차료: 당월 지급액 (임대차기간 전액을 선급하는 경우 월 차임 환산하여 당월분)

*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
- 임차보증금: 보증금의 4%를 월 환산하여 당월분 (보증금×0.04÷12)

* 보증금의 경우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연 4%)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

구분	내용
보증금 산정 예시	보증금 10,000,000원, 월 임차료 300,000원인 경우,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,333원(=10,000,000 × 4% ÷ 12개월) 이므로, 월 임차비용 = 333,333원으로 인정 (단, 지출 증빙한 경우에 한함)

○ (이자비용) 주거시설 임차·저당에 따라 지출하는 이자비용(원금 제외)

- 주택 임차·저당 차입금 또는 월세 대출 이자상환액: 당월 이자상환액

* 단,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은 임차보증금 월환산차임과 중복지원 불가

○ (수선유지비)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

- 수선재료* 구입비: 당월 지출한 수선재료 구입 비용

* 벽지, 장판, 변기, 욕조, 전선, 수도관, 가스배관, 창문, 방충망, 방범창 등

- 설비·수리 서비스* 이용료: 당월 설비·수리 서비스에 지불한 비용

* 전기·가스·방수·도배공사 등 공사비 및 보일러·에어컨 설치비 등(단, 제품 구입비 불가)

○ (수도광열비) 상·하수도, 냉난방 및 취사 등에 필요한 물·연료 비용

- 물 공급비용: 상하수도, 공동수도, 급탕비* 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

* 공동주택에서 온수 공급대가로 지불한 비용 (중앙 및 지역난방의 급탕비)

- 연료비: 전기·도시가스·LPG·등유·연탄·경유 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

○ (공동주택관리비)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